울산 에피트 스타시티 분양광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최초 분양광고일(2025.03.07.) 기준입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자격: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1인당 1실(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 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 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분양: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시	2025.03.12.(수)	2025.03.17.(월) 16:00이후	2025.03.18.(화) 10:00~16:00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계약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울산 에피트 스타시티 견본주택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357)

※ 스마트폰앱: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X				

* 단, 정확한 본인인증을 위하여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부-2174 (2025.03.06.)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미래개발부-신축허가-8호(2025.02.27)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 공급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1681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23,165.8698㎡
- 건축물 연면적: 133,630.9541㎡
- 건축물 층별 용도: 지하 3층 ~ 지상 1층(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전체공용, 부대시설, 근생시설), 지상 2층(전체공용), 지상 1층~지상 17층 오피스텔
- 공급규모: 지하 3층 ~ 지상 17층 7개동 중 오피스텔 총 602실
- 주차대수: 오피스텔 1,064대, 근생시설 31대 총 1,095대

■ 내진설계 등급 : Ⅶ-0.24g등급(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참조)

지진구역계수(S)	지반의 종류	중요도 계수(IE)	내진설계범주	건물중요도	반응수정계수(R)
0.11	S3	1.2	D	1	4

※ 본 건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건축물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메르칼리 진도 Ⅶ등급이며, 최대지반가속도는 0.24(g)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실시 설계 시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일: 2026년 11월 예정(입주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일정은 추후통보)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단위: ㎡)

타입	공급호실(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대지지분
119A	30	119.7527	29.7475	149.5002	8.9348	58.8297	217.2647	37.5939
119B	64	119.9172	30.0762	149.9934	8.9471	58.9105	217.8510	37.6455
119C	380	119.7447	29.3406	149.0853	8.9342	58.8258	216.8453	37.5914
119D	15	119.7839	29.7122	149.4961	8.9371	58.8450	217.2782	37.6037
119E	79	119.6422	28.8121	148.4543	8.9266	58.7754	216.1563	37.5592
119F	34	119.8192	28.6761	148.4953	8.9398	58.8624	216.2975	37.6148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타입	라인	공급호실	층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물비	부가세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 시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	25.07.11	25.09.11	25.11.11	26.02.11	26.05.11	26.08.11	
119A	103동 3, 4호	2	3층	96,658,403	358,855,998	35,885,599	491,400,000	10,000,000	14,570,000	49,140,000	49,140,000	49,140,000	49,140,000	49,140,000	49,140,000	171,990,000
		14	4~10층	101,575,904	377,112,815	37,711,281	516,400,000	10,000,000	15,820,000	51,640,000	51,640,000	51,640,000	51,640,000	51,640,000	51,640,000	180,740,000
		14	11~17층	105,706,605	392,448,541	39,244,854	537,400,000	10,000,000	16,870,000	53,740,000	53,740,000	53,740,000	53,740,000	53,740,000	53,740,000	188,090,000
119B	104동 6호 105동 5호	4	2~3층	94,612,722	351,261,162	35,126,116	481,000,000	10,000,000	14,05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168,350,000
		14	4~10층	99,726,923	370,248,251	37,024,826	507,000,000	10,000,000	15,35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177,450,000
		14	11층 이상	103,660,924	384,853,705	38,485,371	527,000,000	10,000,000	16,35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184,450,000
	104동 5호 105동 6호	4	2~3층	96,579,723	358,563,888	35,856,389	491,000,000	10,000,000	14,55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171,850,000
		14	4~10층	101,693,924	377,550,978	37,755,098	517,000,000	10,000,000	15,85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180,950,000
		14	11층 이상	105,824,625	392,886,705	39,288,670	538,000,000	10,000,000	16,9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188,300,000
119C	101동 1호 102동 1, 2, 3호 106동 3, 4호 107동 1, 2, 3, 4호	22	1~3층	94,219,322	349,800,616	34,980,062	479,000,000	10,000,000	13,95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167,650,000
		70	4~10층	99,333,523	368,787,706	36,878,771	505,000,000	10,000,000	15,25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176,750,000
		70	11층 이상	103,464,224	384,123,432	38,412,344	526,000,000	10,000,000	16,3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184,100,000
	101동 2, 3, 4호 102동 4호 104동 1, 2, 3, 4호 105동 1, 2, 3, 4호 106동 1, 2호	22	1~3층	96,383,023	357,833,616	35,783,361	490,000,000	10,000,000	14,5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171,500,000
		98	4~10층	101,300,524	376,090,433	37,609,043	515,000,000	10,000,000	15,75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180,250,000
		98	11층 이상	105,431,225	391,426,159	39,142,616	536,000,000	10,000,000	16,8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187,600,000
119D	103동 1호	1	3층	96,383,023	357,833,616	35,783,361	490,000,000	10,000,000	14,5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171,500,000
		7	4~10층	101,300,524	376,090,433	37,609,043	515,000,000	10,000,000	15,75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180,250,000
		7	11층 이상	105,431,225	391,426,159	39,142,616	536,000,000	10,000,000	16,8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187,600,000
119E	101동 5, 6호 102동 5, 6호	8	1~3층	95,399,522	354,182,252	35,418,226	485,000,000	10,000,000	14,25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169,750,000
		28	4~10층	100,317,024	372,439,069	37,243,907	510,000,000	10,000,000	15,5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78,500,000
		28	11층 이상	104,447,724	387,774,796	38,777,480	531,000,000	10,000,000	16,55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185,850,000
	103동 2호	1	3층	96,383,023	357,833,616	35,783,361	490,000,000	10,000,000	14,5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171,500,000
		7	4~10층	101,497,224	376,820,706	37,682,070	516,000,000	10,000,000	15,8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180,600,000
		7	11층 이상	105,431,225	391,426,159	39,142,616	536,000,000	10,000,000	16,8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187,600,000
119F	106동 5호 107동 5호	6	1~3층	95,202,822	353,451,980	35,345,198	484,000,000	10,000,000	14,2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169,400,000
		14	4~10층	100,317,024	372,439,069	37,243,907	510,000,000	10,000,000	15,5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78,500,000
		14	11층 이상	104,251,025	387,044,523	38,704,452	530,000,000	10,000,000	16,5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185,500,000

■ 오피스텔 공통사항

• 본 분양대상 오피스텔 602실은 6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약 신청 전 홈페이지와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급금액은 층, 향, 구조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되었으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 청약 신청 시 견본주택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방법: 형별면적(㎡) X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상기 실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 해당 대지면적을 타입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 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1항 3호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면적이 산정됩니다.

• 오피스텔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관리실 등)은 공용면적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실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 상기 분양금액에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비용,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호실 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지하주차장 및 건축 설비실에 대한 금액이 분양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단 위치 지정이나 구분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T.1644-3373)으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계약 시 면적이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 공정이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 이상 투입이 확인 된 시기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실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지적 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 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에 납부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오피스텔의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이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건축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 중 50%는 입주일에, 나머지 50%는 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 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의 개발계획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정부 정책 및 해당 사업주체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분양 및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II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초 모집광고일(2025.03.07.)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1인 1실(건)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 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고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시	2025.03.12.(수)	2025.03.17.(월) 16:00이후	2025.03.18.(화) 10:00~16:00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계약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울산 에피트 스타시티 견본주택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357)

※ 스마트폰앱: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 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통장 취급은행의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오피스텔 청약신청 방법

구분	내용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타입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분	청약신청금	내용
모든 타입 공통	1,000,000원 (일금 일백만원정)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 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청약통장 취급은행 전지점)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4">일반
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사업주체에서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오피스텔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r><td colspan="2">법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부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1부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td></tr>
</table>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서는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 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5.03.0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타입별 동·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하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5년 3월 17일(월) 16:00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당첨조회 →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당첨조회 메뉴에서 조회일 기준 최근 5일 이내 당첨발표한 단지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당첨자에 대한 안내사항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본인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 5항 및 「건축물의 분양에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2항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음.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Ⅲ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소	계약금납부
2025. 3. 18.(화)	10:00 ~ 16:00	울산 에피트 스타시티 견본주택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357)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 작성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잔여 호실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에서 임의분양 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은행명	구비서류
본인 계약 시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계약금(무통장 입금증)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2통(용도:오피스텔 계약용 1통, 설계변경 동의용 1통)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주민등록등본 1통,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
법인 계약 시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계약금(무통장 입금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2통(용도:오피스텔 계약용 1통, 설계변경 동의용 1통)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법인등기부 등본 1통 - 법인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주민등록등본 1통, -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내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인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5.03.0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본인이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2항 규정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해지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시행사로 귀속됨.

• 계약 체결 후 부득이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해약하게 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 따라 계약자가 기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됨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자세한 사항은 분양 계약서 참조)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

• 주변 및 인접부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소음, 진동 등),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본 부지 내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내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에 대한 호수 및 면적, 분양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당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으로 계약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을 준수하여야 함.

• 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 기타 관리비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정하는 관리규약을 준수함.

•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 체결 시, 청약 당첨자의 명의로만 계약이 가능하며, 공동명의는 불가함.

• 입주자 사전방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 방문행사를 실시할 예정임.
(통지는 예정일 10일 전까지 우편으로 하고, 입주자 사전점검 미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사전점검은 없음.)

■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기관 : 추후별도 고지 예정

• 대출금액 : 본 오피스텔은 비규제지역 내 분양 오피스텔로서 분양금액의 최대 60% 범위 내에서 대출 알선(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그리고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출조건 변경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 신청 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및 일반임대사업자등록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무이자 대출로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알선하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아니하거나 대출 불가로 인한 자납 또는 입주지정기간 전에 받은 중도금을 상환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대출이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분양가는 그 금액을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실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음(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함.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하며, 이 경우 중도금대출 무이자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할 수 없음.

• 금융관련 정부 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모든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가격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을 인지)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실입주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대출금 전액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함.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위 표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음.

Ⅳ 추가 선택품목

(단위: 원, 부가세 포함)

품목	선택형	시공부	세부내용	타입					
				119A	119B	119C	119D	119E	119F
시스템에어컨	선택1	실1	제조사는 LG, 삼성 중 1개사로 선정 예정	1,200,000	1,200,000	1,250,000	1,250,000	1,350,000	1,400,000
	선택2	실1, 실2, 실3	제조사는 LG, 삼성 중 1개사로 선정 예정	3,900,000	3,900,000	4,100,000	4,100,000	3,800,000	3,800,000
공기청정기 전열교환기			경동나비엔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욕실 복합환풍기		욕실1, 욕실2	[힘펠] 환기, 제습, 온풍, 드라이 기능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조명특화	선택1	거실, 실(전체), 알파룸, 주방, 식탁, 아일랜드, 복도, 욕실	거실등, 거실간접등(등박스), 실1/2/3등, 실1/2/3 D/L, 알파룸등, 주방사각매입등, 식탁D/L, 아일랜드D/L, 복도D/L, 욕실장하부간접등	5,000,000	5,000,000	-	-	-	-
	선택2	거실, 실(전체), 주방, 식탁, 아일랜드, 복도, 욕실, 팬트리	거실등, 거실간접등(등박스), 실1/2/3등, 실1/2/3 D/L, 주방사각매입등, 식탁D/L, 아일랜드D/L, 복도D/L, 욕실장하부간접등, 팬트리원형매입등	4,700,000	4,700,000	-	-	-	-
	선택3	거실, 실(전체), 주방, 식탁, 아일랜드, 복도, 욕실	거실등, 거실간접등(등박스), 실1/2/3등, 실1/2/3 D/L, 주방사각매입등, 식탁D/L, 아일랜드D/L, 복도D/L, 욕실장하부간접등	-	-	-	-	4,700,000	4,700,000
	선택4	거실, 실(전체), 주방, 식탁, 아일랜드, 복도, 욕실, 천장루버	거실등, 거실간접등(등박스), 실1/2/3등, 실1/2/3 D/L, 주방사각매입등, 식탁D/L, 아일랜드D/L, 복도D/L, 욕실장하부간접등 + 천장루버	-	-	5,000,000	5,000,000	-	-
	선택5	거실, 주방, 식탁, 아일랜드, 복도	거실등, 거실간접등(등박스), 주방사각매입등, 식탁D/L, 아일랜드D/L, 복도D/L	2,600,000	2,600,000	-	-	2,700,000	2,700,000
	선택6	거실, 주방, 식탁, 아일랜드, 복도, 천장루버	거실등, 거실간접등(등박스), 주방사각매입등, 식탁D/L, 아일랜드D/L, 복도D/L + 천장루버	-	-	2,900,000	2,900,000	-	-
	선택7	거실, 주방, 식탁, 아일랜드, 복도, 팬트리	거실등, 거실간접등(등박스), 주방사각매입등, 식탁D/L, 아일랜드D/L, 복도D/L, 팬트리원형매입등	2,700,000	2,700,000	-	-	-	-
	선택8	실(전체), 알파룸, 욕실	실1/2/3등, 실1/2/3 D/L, 알파룸 등, 욕실장하부간접등	2,800,000	2,800,000	-	-	-	-
	선택9	실(전체), 욕실	실1/2/3등, 실1/2/3 D/L, 욕실장하부간접등	2,400,000	2,400,000	2,100,000	2,100,000	2,000,000	2,000,000
욕실 고급형 도기/수전		욕실1, 욕실2	[아메리칸스탠다드] 고급형 양변기, 세면대, 수전류	3,900,000	3,900,000	3,900,000	3,900,000	3,900,000	3,900,000
현관중문		현관	3연동슬라이딩	1,300,000	-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현관	2도어 터닝도어	-	1,600,000	-	-	-	-
바닥재 특화	선택1	거실, 주방, 복도	스톤보드 : 알파룸 특화옵션 선택시	2,100,000	2,100,000	-	-	-	-
	선택2	거실, 주방, 복도	스톤보드 : 알파룸 특화옵션 미선택시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아트월 마감특화	선택1	거실 전면	유럽산 세라믹타일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2,300,000	2,300,000
	선택2	거실 후면	유럽산 세라믹타일, 픽쳐레일	2,700,000	2,700,000	3,000,000	3,000,000	2,700,000	2,000,000
	선택3	주방 식탁 측면 벽 또는 실1 도어 측면 벽	유럽산 세라믹타일	1,600,000	1,600,000	2,200,000	2,200,000	-	-
	선택4	복도	시트판넬	700,000	750,000	1,300,000	1,200,000	1,600,000	1,400,000
주방 스타일링 특화		주방	세라믹타일(주방상판, 주방벽체), 사각싱크볼, 터치식수전	3,400,000	3,400,000	3,000,000	3,000,000	2,700,000	2,700,000
침실 붙박이장	선택1	실2	붙박이장(1개소)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선택2	실3	붙박이장(1개소)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알파룸 특화		알파룸	장식장, 팬트리	3,700,000	3,700,000	-	-	-	-
드레스룸 특화	선택1	드레스룸	벽판넬조명선반, 서랍장	3,400,000	3,400,000	3,800,000	3,800,000	3,500,000	3,300,000
	선택2	드레스룸	벽판넬조명선반, 서랍장, 의류관리기(가전)	4,600,000	4,600,000	5,000,000	5,000,000	4,700,000	-
복도장식장		복도	복도장식장	-	-	1,800,000	1,800,000	-	-
전기쿡탑	선택1	주방	인덕션(2구), 하이라이트(1구) [삼성전자]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선택2	주방	인덕션(3구) [삼성전자]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전기오븐		주방	[삼성전자]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식기세척기		주방	[삼성전자]	870,000	870,000	870,000	870,000	870,000	870,000
냉장고장 SET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삼성전자]	5,500,000	5,500,000	5,500,000	5,500,000	5,500,000	5,500,000

•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인 119B 옵션 타입은 견본주택 건립 타입인 119A 옵션 타입과 실 마감재 및 색상 등이 동일하며,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 구성, 가구 길이, 가구 색상의 조합, 유상옵션의형태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자료(공급안내문, 홍보물, 홈페이지 등)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인 119D, E, F 옵션 타입은 견본주택 건립 타입인 119C 옵션 타입과 실 마감재 및 색상 등이 동일하며,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구성, 가구길이, 가구 색상의 조합, 유상옵션의 형태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자료(공급안내문, 홍보물, 홈페이지 등)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 옵션 마감자재 및 제품 등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성능개선, 디자인 개선, 단종 등), 특허권 분쟁, 제조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 출시 등에 따라 동급수준 또는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사 제품으로 대체되거나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힌지, 레일, 가구 조명, 스위치 등)의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장식성 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 도어가 아니며, 현관 중문 미선택 시 신발장 측면에 날개벽이 설치되며, 평형별로 현관 중문의 형태와 디자인, 규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본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평형별 구동 방식, 사양, 규격이 상이하며, 가구의 규격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2와 실3는 붙박이장 옵션을 각각 선택할 수 있으며, 옵션가구 설치 시 실의 규격 형태가 변경되며, 미선택 시 가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품목 미선택시 옷봉 타입의 기본형 드레스룸 선반이 설치되며, 벽은 벽지로 시공되며, 조명 및 벽판넬, 서랍장 및 악세사리가 미설치됩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품목 선택 시 벽판넬 가구조명, 서랍장 및 악세사리가 설치됩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2는 의류관리기가 설치되며 시스템선반이 일부 축소됩니다.

• 주방 특화 옵션 품목 미택 시 기본 벽타일, 주방상판(MMA), 기본싱크볼, 기본 수전에서 유럽산 세라믹타일(상판+벽체), 와이드 사각 싱크볼, 터치식 수전으로 시공됩니다.

• 주방상판의 기본품목과 옵션 품목의 상판 두께는 상이합니다.

• 세라믹타일 옵션은 자재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본공사 시 나눔 부위(조인트 이음새)가 추가 발생할 수 있으며, 타일의 요철에 의한 줄눈마감, 평활도가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트월 마감특화 선택1(거실전면) 미선택 시 기본타일(800x400)로 시공되며, 선택2,3,4 미선택 시 거실벽지로 시공됩니다.

• 아트월 마감특화 선택2(거실후면) 옵션 미선택 시 픽쳐레일이 삭제됩니다.

• 옵션 가전기기는 품목별로 선택가능하며, 옵션 선택시에만 해당용도의 콘센트가 추가 설치됩니다.

•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옵션 미선택 시 기본 수납장(도어마감)이 동일규격으로 시공됩니다.

• 옵션 가전기기 미선택 시 3구 가스쿡탑만 설치됩니다.

• 냉장고장 SET 옵션 품목 미선택시 냉장고장(상부장 및 측면키큰장)만 설치되며, 냉장고의 종류에 따라 돌출 또는 규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옵션품목 선택시 각 실별 도어개폐방향은 상이할 수 있으며, 도어색상은 해당브랜드에서 제시한 색상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추후 옵션계약시 확인가능)

• 현장여건에 따라 우물천장(간접등박스) 형태 및 규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옵션 미선택 시 우물천장 규격은 축소되며, 간접등박스도 삭제되며, 조명특화옵션 선택4, 6 미선택시 루버판넬도 삭제되며, 기본 천장지로 시공됩니다.

• 바닥 특화 옵션은 패턴과 색상이 모델하우스와 상이할 수 있으며, 마루와 타일의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타일나누기 조인트(이음새)가 위치변경 또는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바닥 특화 옵션 시공 시 재료분리대의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재질,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리콘의 색상,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특화 옵션은 거실, 주방, 복도만 적용되며, 실1, 2, 3, 드레스룸, 알파룸(옵션 미선택 시) 부위는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바닥 특화 옵션 미선택 시 기본마루(침실과 동일패턴)으로 시공됩니다.

• 119A, B 알파룸 특화 옵션 선택시 장식장에 가구조명이 설치되며 별도의 가구 스위치가 설치되며, 119C, D 복도장 옵션의 도어개폐 시 센서형조명으로 설치됩니다.(견본주택 상시조명)

• 본 단지는 선 공정 진행 단지로서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은 2025년 9월까지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계약 일정 등은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금액은 유상옵션 미 선택시 설치되는 기본1대(거실)에 대한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상기 타입별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배관 길이 및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LG 또는 삼성 일반형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공기청정기능 없음)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옵션 미선택시, 기본으로 일반형 시스템에어컨이 1대설치(거실) 되며, 스탠드 또는 벽걸이형 에어컨 개별설치를 위한 기본 냉매매립배관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시 실내기에서 발생하는 응축수의 드레인 배관은 타입에 따라 발코니(다용도실 등)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부 세대(공동주택)가 발코니 비확장 선택시 시스템에어컨이 천장에서 돌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각 단위실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시스템 에어컨 계약이 불가능하며, 오피스텔 공급계약 체결기간 또는 사업주체가 별도 지정한 기간 내 시스템 에어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타입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은 시공상의 이유로 에어컨 공사 시점에 생산되는 모델로 설치되므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옵션 선택 완료 후 계약자 임의로 에어컨 및 실외기를 설치하여 냉방기능 등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추가할 경우, 실외기실에 실외기 추가설치(2단설치 또는 용량증설 등)는 기본 제공되는 전기용량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기청정형 환기시스템 옵션 품목 선택 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에어모니터(이동식)가 제공되며 컨트롤러는 기본형과 다른 모델로 설치됩니다.
• 공기청정형 환기시스템 옵션 품목은 제품 특성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작동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공기청정형 환기시스템 필터교체
• 욕실 복합환풍기 옵션 품목 선택 여부에 따라, 기본형 환풍기와 옵션형 환풍기의 설치 위치는 달라지며, 옵션형 복합환풍기는 무선 리모콘이 제공됩니다.
• 욕실 고급형 도기/수전 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 도기/수전류가 설치되며, 액세서리 및 욕조(욕실1), 분리형 비데(욕실2)는 기본 제공됩니다.
• 유상옵션 금액은 옵션 미 선택시 설치되는 기본형 제품의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V 기타 계약자안내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추후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전매에 대한 사 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나,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이행 및 당사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2026년 11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 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 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본 건축물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입주시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출토,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결정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10의2호에 따라 시공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 개시 이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확한 예정 일자는 별도 통보한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을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해당 실의 오피스텔 공급대금에 따른 인지세와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인지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형토지신탁

• 본 분양목적물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자” 강한종합개발(주)와 토지를 수탁받은 “수탁자” 신한자산신탁(주) 및 시공사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본 조의 특약사항은 분양계약의 다른 일반조항 및 본 분양광고의 다른 내용보다 우선하며, "을"은 다음사항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시행위탁자 강한종합개발(주)와 시행수탁자 신한자산신탁(주)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에 따라 신한자산신탁(주)이 공급하는 건으로서, 신한자산신탁(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사항만을 부담할 뿐이고, 본 분양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분양사업자는 시행위탁자 강한종합개발(주)임을 매수인은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 시행수탁자 신한자산신탁(주)은 시행위탁자 강한종합개발(주)로부터 토지를 수탁 받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오로지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해약금반환, 입주지연시의 지체상금 책임 등)는 시행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강한종합개발(주)이 부담합니다.

• 본 사업 관련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해지 및 종료(정산 포함)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신한자산신탁(주)이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시행위탁자 강한종합개발(주)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은 이에 동의하고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하자보수(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에 대한 일체 책임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위탁자 강한종합개발(주) 또는 시공사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에게 있고 수분양자는 신한자산신탁(주)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 PF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 매수인은 신한자산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실 가상계좌 포함)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함을 확인하며. 매수인은 반드시 신한자산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실 가상계좌 포함)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또는 공급자인 신한자산신탁㈜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신한자산신탁(주)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신한자산신탁(주)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분양자는 신한자산신탁(주)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인지합니다, 하자보수책임은 시공사에게,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강한종합개발(주)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수분양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체결된 각종 개별계약(위탁자 및/또는 분양대행사와 수분양자간의 임대확약, 수익보장, 계약해제합의, 환매확약, 할인분양, 대물변제 등)에 대해서 수탁자인 신한자산신

탁(주)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시행위탁자 강한종합개발(주) 또는 매수인은,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 시 해당 기한 내(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신한자산신탁(주)의 사전 승인 없이, 시행위탁자 강한종합개발(주)와 매수인("을")간에 또는 시공사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와 매수인("을")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신한자산신탁(주)에 대해서는 일체 효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본 특약사항의 내용은, 본 계약의 어느 조항보다도 우선하여 적용한다.

Ⅵ 기타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 및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1. 일반 유의사항	• 면적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승인된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시 사업부지의 일부 또는 전체가 합병·합필이 되어 지번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단위실상으로 수입인지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실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 총 대지지분을 타입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여 소수점 4째자리까지 기재하였습니다.) • 호실 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EPS, TPS, AD/PD, PIT, ST, AV 등의 내부벽체(ALC(경량콘크리트블록), 콘크리트벽체)는 초벌미장 시공을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벽체 미장은 E/V 홀 또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시공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 등)는 시행사 및 시공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오피스텔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점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수분양자를 위하여 본 건축물의 공사 진척사항 열람을 위하여 에피트홈페이지(https://brand.hldni.com/)에 정기적으로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인허가	• 건축허가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실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건축물의 색채, 형태(외벽 및 측벽 줄눈, 저층부 및 출입구, 문주 디자인,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디자인, 옥상 및 옥탑 구조물, 실 및 부대시설 창호 크기 및 난간 형태 및 색상 포함),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심의(또는 자문) 법규의 변경 및 시공 과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옥상 및 옥탑 구조물의 경우 구조검토 등을 통

	해 재료 및 마감, 부재의 크기, 디자인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및 기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향후 변경사항은 고지 예정입니다. • 대지 확정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견본주택, 오피스텔 배치,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조경면적 등), 각종 인쇄물상의 구획선, 오피스텔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실별 대지지분은 주거부 대지비율 면적을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 위치 등) 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지만, 인·허가 과정 및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입주민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외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오피스텔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하였으나,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전면공지, 공개공지 등은 입주자 외 다중의 이용이 가능함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철도 선로와 인접한 관계로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에따른 민원을 국가철도공단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내에는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지역정압기 설치를 위한 부지 점용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며, 입주민께서는 해당 점용계약의 내용을 조건없이 승계하여야 합니다.
3. 분양 광고물	• 공급안내문 및 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광고일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십시오. • 분양대상물의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이 삽입된 분양 관련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교육시설,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이나 개발주체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주변환경, 부지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공급안내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실 평면도, VR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셔야 합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예정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도 상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단위실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계도서와 모형, CG 등 분양광고물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시공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4.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는 119A, 119C 타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식재, 경관연출 등)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차·보도 포장, 식재, 시설물의 마감 재질, 디자인, 선형, 위치, 규모, 색채, 거리, 폭을 포함하여 주변환경과 부지 내 계획고변경에 따른 고저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실의 마감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에는 인허가청에 제출된 마감재리스트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추가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시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추가선택 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에서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단위실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냉장고, TV, 세탁기, 건조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으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견본주택 내 실1 발코니에 설치된 바닥마감재 및 가구, 소품 등은 연출용으로 설치된 전시용 제품으로, 본공사시 제공되지 않으며 실1 발코니는 물쓰는 공간으로 설계되어 바닥 배수구 및 타일마감(실외기실 바닥마감과 동일한 바닥타일)이 기본설치됩니다. 또한 발코니는 단열 및 바닥난방이 제공되지 않는 공간이며, 실1과 발코니 사이에는 본공사시 분합문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공사 및 하자보수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VR 및 단위실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환기디퓨져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소방설비로 실제와 위치/개소 등이 상이하며, 본공사 시 소방법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탁기 크기로 인한 세탁실 출입 등) •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시설물, 환기구(DA),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등은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침실 벽체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단위실 내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공사 시 냉방전용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이 추가선택품목으로 제공되며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연출용 조명기구는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온도 조절기, 일괄소등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등의 제품 사양은 동등 이상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에는 가스식 건조기 설치를 위한 연도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가스식 설치 불가) • 견본주택에 표시된 가스 배관 위치는 본 공사 시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주방가구 상부장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스마트홈 기능 홍보 및 구현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모형의 경관 조명 및 입출차 차단기는 연출된 것으로 실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류(시스템가구 포함)의 바디 및 도어 마감재는 본공사시 동등이상 제품이 설치될수 있습니다.
5. 단지 및 주동계획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공급안내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단위실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 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 도서 작업)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등은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관계법령에 따른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또는 지번은 계약체결 이후에 상표등록 여부 및 필지의 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홍보물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와 가감속 차로차선은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외곽 보행자도로의 일부구간이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경사가 모형에 비해 가파를 수 있으며, 계약전 현장을 확인하셔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의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단지 배치 및 동별,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 받을 수 있으며, 사업부지 주변 오피스텔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오피스텔 동별,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 일조량의 감소,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현상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재활용 분리수거공간, 음식물 쓰레기처리, 재활용 창고, 자전거 보관시설 등) 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 및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이 필요하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 복리시설, 주차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호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부 문주 계획으로 인접동의 저층실에 조망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배치 상 일부동의 저층실 및 특정실은 일조권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실이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단지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3동, 106동, 107동 하부에 기계실, 발전기실, DA 등이 위치하여 사용에 따른 소음, 진동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냉난방 및 환기시스템 실외기가 각 시설의 옥상 및 주변에 설치될 수 있으며, 향후 입점 업종에 따라 인근 실에 소음 및 열기,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실 및 각 동의 저층부 인접실은 필로티 및 중앙광장 등 공동개방공간을 사용하는 입주민에 의한 소음 및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실에서는 단지 내 야간조명 효과, 야간 시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과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탑라이트,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쓰레기 및 재활용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 등의 설치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법 또는 건축허가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함(재활용 보관소 포함)은 동 당 1개소(107동 제외)가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동은 2개소가 병렬 배치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개소는 건축허가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실 위치 및 주동 출입구의 위치에 따라 이동거리가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도로, 필로티 및 저층 인접실은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시선간섭 등의 사생활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캐노피 설치 부위 주변실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창호형태, 난간종류, 조경, 고층오피스텔 특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승강기를 사용하여 이사하셔야 합니다. •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담장)는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의 고저차로 인해 동별로 진입동선의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전 단지 모형 및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도면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단지 내 비상차로는 시공시 및 소방준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차로구간은 비상차량(소방, 이삿짐 등)의 통행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의 보행시 경사도에 따라 보행의 지장과 미끄러짐 등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외부에 계획된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 정차공간 및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부위에는 식재 및 차폐 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실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등급 Ⅶ-0.24g 입니다. • 오피스텔을 포함한 본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 명칭, 경관계획 및 색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동 표시, 동 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 내부에는 석재, 석재뿜칠, 도장 등이 혼용되어 시공됩니다. • 우편물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발코니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오피스텔 측벽 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계단실 및 승강기 홀 공용부 창의 경우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창호 형태 및 너비/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실/공용부 창호의 제작사 및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탑의 높이와 형태는 고도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 측벽 로고의 위치 및 개소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인 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및 난간의 형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동 및 외부 시설의 외관/색채 등의 공용부 설계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개인 취향에 따라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옥탑 BI 조명(105동)으로 인하여, 인접 실에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탑 BI 조명(105동) 설치위치는 변경이 될 수 있다. • 조명 관련하여 인접 실에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및 옥탑 태양광 형태 및 너비/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에 주방 등의 시설이 입점하는 경우 배수구 연결 시 그리스트랩 등을 설치(입점자 부담)하여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조치 후 사용하여야 하며, 용량에 맞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에 주방 등의 시설이 입점하는 경우 주방배기를 위한 장비 및 덕트설치는 입점자 공사분이며, 인접 점포 및 실에서는 냄새,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에 각 호실별 도시가스배관은 볼밸브 마감으로 설치되며, 필요 시 입점자 부담으로 계량기 설치 및 배관공사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천정공간에는 공용배관 및 공용덕트설비 등이 설치되므로, 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며 공용부 또는 타 호실에 대한 유지관리시 공간확보가 필요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따라 지역정압기가 설치되어 소음 및 조망 등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상 및 옥탑에 소화수조 및 제연휀이 설치됨에 따라, 최상층 및 인접세대에 소음, 진동 등 환경적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비상차로의 폭, 경계석 위치, 형태, 회차동선, 회전반경 등은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와 내부에는 레벨 차이로 옹벽, 조경석 쌓기 등의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구간, 높이, 형태,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계단과 경사로의 레벨, 형태, 마감, 난간 높이 등은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D/A (설비 환기구) 의 노출이 있으며, 보행공간에 인접한 경우 통행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성되는 공개공지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지정된 대지안의 공지 구간으로 외부인의 이용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성되는 공개공지는 디자인, 식재 배치, 시설물, 포장 등은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형태, 색체, 마감, 규격,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목의 수종, 규격, 식재 위치는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에 일조와 조망 간섭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방차량 활동구역 및 에어매트 주변에는 소방구조활동을 위하여 수목 식재가 제한되며, 준공시 소방점검 의견에 따라 수목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형태, 색체, 마감, 패턴, 위치, 규격 등은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육생비오톱이 조성되며, 곤충이나 조류 등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은 102동, 104동, 107동 사이에 1개소 위치하며, 일부 세대에 소음, 진동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의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유지 · 관리 · 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은 인계 후 안전, 보건 수질관리는 관리 주체의 의무이며, 관리 소홀로 인한 오염수, 미생물 발생 등에 대하여 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 내 자전거보관대의 설치 규모, 위치 등은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옥상조경이 조성되며,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유무,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옥상조경의 조성으로 일부세대 소음과 진동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옥외에 설치되는 조명(보안등, 볼라드등, 소목투사등, 휴게시설 내 조명 등)과 인접세대는 빛 공해로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옥외에 설치되는 조명(보안등, 볼라드등, 소목투사등, 휴게시설 내 조명 등)의 위치, 수량, 형태, 규격 등은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 놀이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관리시설, 옥상조경 등 조경공간의 인접세대에는 소음, 진동, 시야 간섭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민 개인의 취향이나 요구사항에 따라 추가 설치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견본주택 내 모형을 통해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 또는 인근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의 조경 수목, 시설물, 포장의 추가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후 조경 수목, 시설물, 포장 등의 유지관리 의무는 관리주체 및 입주민에게 있으며,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수목 고사, 시설물 및 포장의 하자는 시공사에 책임이 없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6. 주차장	• 본 단지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된 시설로서 오피스텔의 주차장은 1,064대로 구성되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31대로 별도 계획합니다. •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주차장에 설치(급속 6대, 완속 6대, 콘센트형 43대)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추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금형 콘센트가 설치되는 일부 주차면은 일반 주차면과 공용으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본 단지의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 입주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진입구는 103동과 104동 사이에 위치하며, 인근 저층 실은 진입램프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1층의 주차장 주출입구는 법적기준에 따라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2.7M 이하의 택배차량이 각 동별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지하2층은 택배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배치 여건에 따라 일부 경우 주차 후 해당 동의 승강기 홀 접근의 이동거리가 멀거나 증가, 해당 동의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계약전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에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설계여건에 따라 주차장 내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며, 일부 주차면은 기둥과 간섭으로 운전석 및 보조석 승하차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과 오피스텔 승강기 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지하출입구 편의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대수 및 위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우수조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 및 장비의 가동으로 인하여 일부 저층 실에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내 주차장은 우기 등의 기상요건에 의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바닥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 부의 마감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차장 바닥마감은 설계에 배수 구배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현장 여건에 따라 지하 외벽과 주차구획의 이격으로 인해 일부 주차통로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천창)이 노출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우·오수 배수시설, 저수조, 빗물저수조, 기전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공용부 등에 설치되는 트렌치는 구배가 없이 시공되며 일부 부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7. 부대 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공간만 제공되며, 집기, 비품, 운용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등은 입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운용하여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여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통신시설물, 놀이 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 시설, 수목 관리, 공용부 환기설비, 공용부 동파 방지 열선 시설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 보수 · 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등)은 사업주체가 사용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운용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가 직접 운용하여야 하며, 계약자(입주자)의 추가적인 요구에 의한 집기 및 비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단지내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등)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 동 하부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지붕의 조경 공간은 외부 출입 및 활동공간이 아니며, 출입시 추락 등의 사고발생 위험이 있음으로 해당 외부공간으로 출입은 불가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을 위해 근린생활시설 수분양자 혹은 이용객의 단지 내 진입이 불가피하며, 향후 분쟁발생 시 입주민과 근린생활시설 수분양자가 관리규약에 의해 분쟁사항을 조정해야합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부대시설 :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재활용 창고 및 쓰레기 분리수거장 ② 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도서실(또는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개인PT실), 키즈플레이, 입주자 회의실, AV룸, 악기연습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계획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 101동, 103동, 104동 1층 - 주민공동시설 : 관리사무실 101동 지상1층, 피트니스 106동 지하1층 - 펌프실, 저수조(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용) : - 주차장 램프 : 103동 104동 사이 진입로, 101동 램프 진출구 - 키즈플레이, 북카페 : 105동 1층 -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피트니스 : 어린이놀이터 101동 인근, 유아놀이터 105동 인근, 피트니스 106동 지하1층 • 부대복리시설 중 피트니스, 악기연습실, AV룸,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의 경우 지하층에 설치됩니다. • 커뮤니티시설은 지하주차장 및 지상1층의 별도 계단을 통해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점 업체는 분양광고 기준으로 미확정이며, 추후 개별 분양으로 운영되는 입점업종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공용부 엘리베이터 홀의 지하층은 바닥-타일,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1층은 바닥-타일,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기준층은 바닥-타일, 벽-도장 마감 기준으로 시공되며, 마감재의 품절, 품귀 시 동등 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각 실의 천정고, 창호의 크기 및 위치, 기능,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내외부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설계상 부대복리시설은 오피스텔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각 시설별 해당 부대복리시설의 면적은 각 해당 시설의 기타공용면적에 분배되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클럽)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한 체육시설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는 일부만 제공됩니다. • 시공사는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실인 119B는 119A의 색상마감, 119D, E, F는 119C 실 마감재 및 색상 등이 동일하며,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구성, 가구길이, 가구 색상의 조합,

8. 실 평면, 가구 및 마감재	유상옵션의 형태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자료(공급안내문, 홈페이지 등)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니트 마감자재 및 제품 등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성능개선, 디자인개선, 단종 등), 특허권 분쟁, 제조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 출시 등에 따라 동급수준 또는 동급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사 제품으로 대체되거나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힌지, 레일, 가구조명, 스위치 등)의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단위실의 천장고는 2,300mm(침실 기준)이며, 욕실, 실외기실, 발코니, 다용도실 등의 부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에 따라 확장 불가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타입별 단위실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을"은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타입별/동·호수 등에 따라 각 시설별 공간의 크기, 창호의 크기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동일한 타입별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실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합니다. 또한 각 동별 계단실, 승강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여 주십시오. • 각 실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오피스텔의 특성상 향후 층간/단위실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실외기 및 보일러 , 외 피난 동선에 방해가 되는 다른 물품을 적재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증감시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소방진입공간에 설치된 창호 하부창은 소방대진입창으로 소방법규에 따라 소방대진입창 표지가 붙을 수 있으며, 119E타입은 주방/식당 창호에 소방대진입창 표지가 붙을 수 있습니다. • 타입별 실1 발코니에 완강기 지상 3~10층까지 설치됩니다. • 본 오피스텔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증감시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실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용도실 내 세탁기 설치공간은 가로 90cm, 세로 90cm 규격으로 확보하여 해당 규격 이하의 세탁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일부 타입의 경우 세탁기 설치시 세탁기 용량에 따라 다용도실 도어를 탈거해야 합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 등)에는 마루, 타일, 석재, 도배 등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마루바닥재는 자재의 수급 시점에 따라 마루코어재(바디재)가 변경될 수 있으며, 패턴과 색상이 균일하지 않거나 표면텍스쳐, 폭, 두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바닥재는 타일나누기가 추가, 변경될 수 있으며, 패턴과 색상이 모델하우스와 상이할 수 있으며, 기본마루와 옵션바닥재 사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패턴과 색상이 균일하지 않거나 표면텍스쳐, 폭, 두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마루 및 옵션바닥재 사이에 재료분리대가 설치되며, 재료분리대의 재질, 형태 및 실리콘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리콘의 색상,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다용도실/실외기실/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허용범위 이내의 오차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공용)은 본공사 시 PVC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여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욕실 환기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고 해당 변색은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본공사 시 실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복도 또는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 내 욕실, 발코니, 다용도실 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실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마루자재 및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의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거실 아트월, 욕실, 주방 등 타일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견본주택과 동일한 패턴으로 설치되지 않으며, 색상, 줄눈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현관 디딤판/걸레받이, 욕실 뒷선반, 주방 상판 및 벽체 등에 사용된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패턴, 색상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나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엔지니어드 스톤과 인조대리석 등은 자재특성상 본공사 시 이음매가 보일 수 있으며, 본공사시 패턴 및 색상 등이 견본주택 설치실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주방벽 타일/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 아트월 등)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석재류는 자재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본공사 시 나눔부위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타일 및 석재류에 의한 줄눈마감, 평활도가 균일하기 않을 수 있습니다. •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등)는 시공방식 및 도색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특성상 이음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와 무관합니다. • 유니트 내 바닥재인 마루바닥재의 구성 부재 중 심재(코어)의 재료는 내수합판 또는 고밀도 섬유판이 사용됩니다. • 본공사 시 일반가구/주방가구 등 마감재의 치수 및 색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시공 여건에 따라 우물천장 높이 및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 코킹 두께 및 색상등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벽, 측벽, 실간벽은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 실 및 동일실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커튼박스 길이는 천장배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사 시 욕실 천정에 급수급탕분배기와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할 예정이며, 점검구의 위치, 개소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실 금속도어(현관 방화문) 및 목창호, PL창호의 문짝,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가구류(시스템 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가구 디테일 및 이음매 위치, 도어 나누기 등은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며 냉장고 뒤쪽 벽체는 벽지로 마감됩니다. • 각 단위실 내부에 적용되는 가구의 패턴글라스는 유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실 목문 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시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현관 방화문은 성능에 따라 형태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타입에 따라 침실 창호 크기가 다르게 설계 되었습니다. • 주방 상판 싱크대 하부에 설치되는 물끊기 홈은 본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길이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에는 ABS도어가 설치되며, 입주자의 가전, 가구 등이 견본주택에 전시된 가전 및 가구 등과 상이하여 돌출되거나 도어통로로 이동배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119A, 119B, 119F타입은 다용도실 도어와 실외기실 도어를 동시에 열었을 경우 문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창호	• 외부 창호의 프레임, 색상, 형태, 개구부의 크기, 하드웨어, 유리 사양 등은 성능개선, 안정성 검토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및 제조사는 내풍압을 고려하여 실별, 층별, 위치별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사양, 열림(개폐) 방향, 색상, 형태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프레임 접합 등에 따라 실내에서 프레임 사이에 줄눈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단위실 외측 창호에 방충망이 설치되며, 내측(분합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타입별 거실 및 실 1의 발코니 외부창호는 철제 난간 및 창호가 설치되며, 형태, 색상, 높이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는 단창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창호 공사 시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주방상부장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사이 유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공용기계 전기설비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에 의거 단지 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 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해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외안테나 설치 예정 위치: 해당없음 - 중계장치 설치 예정 위치: 지하2층(휀룸#3,제연휀룸#3,제연휀룸#5), 지하1층(창고(103동)), 지상8층(구내통신실(6개소)) • 건축물 내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에 설치되는 CCTV는 기능과 감시 범위에 따라 수량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CTV 촬영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자의 방범과 안전, 편의성을 위해 설치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내부에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지상 개폐기, 패드, 전주, 변압기, 맨홀 등)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맨홀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특정 실은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 침해 등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고, 시설물의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동 및 일부 층은 주동 측벽에 낙뢰 예방(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을 위한 측뢰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실 평면 배치와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위치 등을 확인하여 주시고,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상 도로가 없는 일부 실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 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성상 일부 실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임의 사용에 의한 파손의 복구 비용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따릅니다.) • 엘리베이터 사용 시, 이사 실의 전용 이용 또는 일부 시간대 혼잡으로 인하여, 대기시간 지연 및 사용 불가가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준공 전 일정 기간 동안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인수인계 후 운행으로 인한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하에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속도, 인승, 설치 수량 등은 각 동의 층수 및 실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 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인허가 내용과 다르게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등의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기계실/우수조 등이 설치되어 장비의 정기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배연 등으로 생활에 불편함에 초래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부대시설, 주차장 출입구, 전기실/발전기실/기계실 등의 D.A, 부대시설의 실외기 시설,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 등에 의해 일부 특정 실은 조망권, 일조권 및 환경권 침해 등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 주차장 내에 전기차충전설비가 계획되어 있으나 인허가 사항이나 주차장의 구조 등에 따라 위치 등이 계획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전기차충전설비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차 대수에 전기차충전구획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주차면은 실제 주차 용도에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된 시설물(전기차충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경관조명, 옥외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 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 시설, 수목 관리, 공용부 환기설비,

	공용부 동파 방지 열선 시설, 제습장치, 냉난방기,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동 상부(옥상, 외벽 등)는 의장용 구조물, 경관조명, 설비 통기 배관, 발전기 연도, 위성 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안테나, 피뢰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조망 간섭, 야간조명의 영향, 눈부심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해 일부 특정 실은 침해를 받아 생활의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으며, 설치 용량 및 수신 감도 등에 따라 위치, 개소 및 수량이 변경되는 사항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 주차장 상부는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등의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인택배함 설치 위치 및 수량은 인허가 내용 및 시공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무인택배함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복도 등의 천장 내부 공간이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리사무소, 부대시설, 지하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실내 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실기계 전기설비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시공되며, 개별적인 위치 변경 요청은 불가합니다. • 실 분전반(「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에 의거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설치)과 실 통신 단자함(「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별표 3의 주) 3」에 의거 실 단자함은 주변의 구조물이나 설비 등에 의해 운영과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침수 및 결로 발생의 우려가 없는 노출된 장소(신발장, 다용도실, 발코니 이외의 장소)에 설치)은 견본주택에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공사 과정에서 위치나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 통신 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 장치가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거실 벽면에 벽걸이 TV 설치를 위한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전기·통신용 매입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 또는 시설물 안내서의 유의 사항을 확인 바랍니다. • 실 거실과 각 침실에 설치되는 통합스위치는 조명기구 점등과 소등, 대기전력 차단, 난방 온도조절의 기능이 통합된 제품으로 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 마감재(실 분전반, 실 통신 단자함, 월패드, 조명기구, 배선기구, 콘센트, 통합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수량 및 사양은 추가 선택품목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덕션, 하이브리드 등 전기쿡탑 용량은 3kW 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며, 입주자가 추후 3kW 이상의 제품으로 별도 설치하는 경우 배선 및 배선기구의 변경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실 내 설치되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이용하여 방문자 확인, 가스밸브제어, 일괄소등제어, 엘리베이터 호출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에 따른 별도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실 전유 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전동식 빨래 건조대가 설치되며, 별도의 조명기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실 조명기구는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단종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형태 및 모양 포함) • 일반가구, 주방가구, 시스템가구 등에 설치되는 인테리어조명은 일괄소등이 불가능하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실 분전반의 전원 구성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하며,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단위실 내 욕실 세면기, 양변기, 주방 개수대, 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 팬, 천장 점검구의 위치/수량, 사양, 크기,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급수,급탕 분배기는 유지관리를 위해 본 공사시 설치층수 또는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 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 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배수구, 수전 및 액세서리류 등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연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욕실1에는 난방코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싱크대 하부의 가구 디자인은 설비기기(온수분배기 등)가 설치됨에 따라 견본주택 사양과 내부 폭 가구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쿡탑 주변 주방 상판에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 또는 점검용 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되며 레인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 및 상부장 수납공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에는 관계법령 준수로 인한 배관 및 스프링클러 헤드가 노출되어 미관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 위치와 개수는 변경 될 수 있으며, 각종 설비배관의 노출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는 세탁기 설치 제외 부분은 난방구간으로 계획하였지만 설치되는 수전 및 배수배관, 스프링클러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해야 합니다. • 119C, 119D, 119E 타입은 세탁기 옆으로 보일러가 설치되므로, 보일러 유지관리에 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다용도실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위실에 설치되는 환기장치의 환기덕트 및 주방,욕실 배기덕트 내부에 실내.외 온도차에 인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환기 설비는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실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 날 수 있음),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환기설비에 따른 급배기 덕트가 다용도실 상부에 노출되어 설치되며 이는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119F타입은 주방용 배기덕트가 다용도실과 실외기실 상부에 노출되어 설치되며 이는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각 실 주방 배기 및 욕실 배기는 당해층 직배기로 설치되며, 주위 환경여건에 따라 냄새 및 소음,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으며 배기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일부타입은 욕실 직배기에 따른 덕트 및 배기구가 침실구간에 설치됨에 따라 커텐박스의 깊이나 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우물천장은 천장 내 설비배관 및 덕트로 인하여 천장고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텐박스 깊이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형 시스템에어컨이 기본으로 거실에 1대 설치되며, 스탠드 및 벽걸이형 에어컨 개별설치를 위한 냉매 매립배관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분양광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분양광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 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물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9조의2에 의거 적용됩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건축심의 내용 이행 또는 심의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인·허가조건 변경, 각종 인증을 위한 변경사항 등에 동의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므로 계약자는 오피스텔 계약면적 외의 시설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해당시설 계획(건축, 구조, 기계, 전기 등)은 추후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 함.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 거래신고로 갈음(30일 이내 신고)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함
-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해야 함

-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함.

■ 견본주택 및 홍보물 관련 사항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 품절, 품귀 등으로 시공 중 동질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전에 비디오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 및 컴퓨터 그래픽 및 홍보물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정압실 위치 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분양을 위해 사용된 유인물의 치수는 인쇄 과정상 오탈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여야 함.

• 마감자재 내용은 타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 타입별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호실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및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연출한 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전단지, 리플렛 등 인쇄물, 견본주택 내 사인물)의 모든 이미지와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시공시 견본주택 시공을 기준으로 실 시공됨을 상호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유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함.

• 각종 광고, 홍보물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도로망, 주변 시설물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대지 경계선 외의 시설물은 이미지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커튼, 침대, 가전, 악세사리 등 집기류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

•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시공 중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냉난방 겸용으로, 본공사에는 냉방전용(공기청정기능 없음)으로 설치되며 제조사 사양, 설치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건립실 천장에 시공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 건축물 용도이며, 본 공사 시 설계도서 기준으로 시공 됨.(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마감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주방가구, 일반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 소등스위치, 월패드, 디지털 도어록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9조의 2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 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VAT 별도)

구 분	건축 감리	구조감리	전기통신 감리	소방 감리
회사명	㈜백도종합건축사사무소	㈜보성이엔지그룹	㈜동도이엔씨	㈜이앤에스
감리금액	1,900,000,000	112,500,000	1,260,000,000	288,000,000
사업자등록번호	390-81-01691	120-86-94392	215-81-99690	504-86-12093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시행사	위탁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상 호	신한자산신탁(주)	강한종합개발(주)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주)	㈜에이치앤씨파트너스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동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706,1동 1029호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신천동)	경기도 광명시 새빛공원로 67, 비702호
법인등록번호	110111-3543801	280211-0205770	1101111-0274699	234111-0124209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 : 신한자산신탁(주) / 사업장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080061
- 사업방식 : 관리형 토지신탁
- 공급대상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 용도 · 규모

①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1681(울산 경부고속철도울산역역세권 S2BL)

② 지목 : 대

③ 용도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④ 규모 : 지하 3층 ~ 지상 17층(오피스텔 : 지상 1층 ~ 지상 17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일반상업지역, 특화시설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 소유권에 관한사항 : 대지소유권 100%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완납 시 개별 등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의거 이전고시 이후 보존등기 완료 후 소유권 이전 예정)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울산에피트 견본주택 위치	
	울산에피트 견본주택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357
홈페이지	분양문의
https://brand.hldni.com/ulsanstarcity/	☎ 1644-3373

※ 본 입주자모집광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광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